동아리연합회 회칙

(2026.05.01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1절 동아리연합회 총회

제2절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제3절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제4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5절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제6절 분과 회의

제7절 분과장

제8절 비상대책위원회

제9절 특별위원회

제3장 재정

제4장 동아리등록

제5장 선거

제6장 탄핵

제7장 징계

제8장 회칙개정

제9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회는 창조적이고 건전한 대학 문화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율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원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회는 전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중앙동아리(정동아리, 준동아리 및 신규동아리)에 적을 둔 본교 학생으로 한다.
2. 졸업을 하거나 제적을 당한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회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해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휴학생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이 위협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각 동아리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5. 각 동아리는 지도교수 유무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본회의 회의에 불참한 자는 그 권리를 각 회의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8. 본회의 회원은 특별한 사안에 따라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9. 준동아리 및 신규동아리 회원은 예산 집행 및 기타의 의결권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참관권을 갖는다.
10. 본회의 각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지원금에 대해 본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의결기구)

1. 본회는 의결기구로서 총회,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분과 회의를 구성한다.

2. 연합회장의 발의로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특별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의결 정족수)

1.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3. 특별 의결 정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제한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동아리연합회 총회

제8조(지위)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9조(구성)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전 회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의장)

1.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연합회장이 맡는다.
2. 연합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 부연합회장이 맡는다.
3. 연합회장, 부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소집)

1. 본회 총회는 대표자 회의에서 요구하거나 재적 회원의 100인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공고 :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권한)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인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3조(의결)

1. 재적 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14조(지위)

본회의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15조(구성)

1. 본회의 운영위원 및 각 동아리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2. 각 동아리의 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 각 동아리 의회나 임원회의를 거쳐 선정되고 위임장을 소지한 자는 각 동아리 회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본회의 모든 회원은 대표자 회의 참관권을 갖는다.
4. 의결 권한을 갖는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하나의 동아리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동아리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준동아리 및 신규동아리 대표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위임)

1. 동아리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동아리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회 2시간 전까지 연합회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2. 이미 전동대회 구성원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의장)

1.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연합회장이 맡는다.
2. 연합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 부연합회장이 맡는다.
3. 연합회장, 부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1. 동아리연합회 총회 소집

2. 사업계획 심의, 의결
3. 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 승인
4. 본회의 결의, 재정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
5. 집행부 각 국장 및 특별기구장 임명 동의
6. 집행부 각 국장 및 특별기구장 해임
7. 특별기구 설치 의결 및 그 활동에 대한 심
8. 회비 및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심의, 의결
9.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10.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 및 의결
11. 동아리 제명에 대한 심의, 의결
12. 분과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심의, 의결
13. 연합회장 탄핵

제19조(소집)

1. 정기회의 : 정기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학기 당 1회 연합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 :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연합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공고 : 동아리 대표자 회의 소집은 적어도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1. 일반정족수 : 제17조(업무 및 권한)에 규정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의결사항 중 1에서 9항은 제6조 1, 2항에 의해 의결한다.
2. 특별정족수 : 제17조(업무 및 권한)에 규정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의결사항 중 10에서 13항은 제6조 3항에 의해 의결한다.

제21조(특별기구)

1.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업무상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기구의 업무수행이 끝나면 기구장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하고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제22조(지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의결기구로서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기구이다.

제23조(구성)

1. 연합회장, 부연합회장, 각 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된다.
2. 본회 집행부의 각 국장은 출석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24조(의장)

1. 동아리 대표자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합회장이 맡는다.
2. 연합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 부연합회장이 맡는다.
3. 연합회장, 부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예산, 결산 심의
2. 대표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3.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
4. 회칙 개정안 발의 및 검토
5. 특별기구 설치를 대표자 회의에 발의
6. 특별기구장 심사 및 임명
7. 동아리에 징계 사항(경고 및 최후경고)을 심의, 의결
8.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한 승인
9. 분과의 신설 및 통폐합을 대표자 회의에 발의
10. 대표자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대표자 회의 결정권을 위임받았을 경우 대표자 회의의 업무와 권한을 대신하여 의결, 집행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
11. 기타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 집행하고 사후 보고
1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3. 예비비의 집행 승인 및 가예산 결정

제26조(소집)

1. 정기회의 : 정기 운영위는 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 : 임시 운영위는 연합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의결)

제25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28조(구성)

동아리연합회 연합회장과 부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지위 및 역할)

1. 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동아리연합회의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2. 부연합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30조(임기)

임기는 당선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일로부터 해당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의무)

전체 동아리 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

1. 총회 소집
2. 대표자 회의 소집
3. 운영위원회 소집
4. 집행부 임명 및 탄핵
5. 동아리연합회 예산 집행 승인
6. 동아리 징계 발의
7. 회칙개정 발의
8. 분과 및 집행부 신설과 개편 발의
9.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

제5절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제33조(지위)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는 본회의 상임 집행기구이다.

제34조(업무 및 권한)

1.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각 집행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별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 제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1. 5국으로 구성되며 연합회장의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사무국, 정책국, 대외국, 복지국, 홍보국으로 구성된다.

제36조(소집)

1. 정기회의 : 정기 집행부 회의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 : 임시 집행부 회의는 회장 또는 집행부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6절 분과 회의

제37조(역할)

각 분과의 최고심의 의결기구이며, 각 분과의 특성에 입각하여 분과의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분과 내의 통합력을 제고한다.

제38조(구성)

1. 분과장과 해당 분과에 속한 정동아리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2. 과학기술분과, 사회활동분과, 연행예술분과, 종교분과, 창작전시분과, 체육분과, 레저스포츠분과, 학술언론분과의 8개 분과로 구성된다.
3. 과학기술분과 :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하여 민족 과학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분과
4. 사회활동분과 : 봉사와 연대활동을 통해 자발적 사회참여와 나눔의 문화를 만드는 분과
5. 연행예술분과 : 연행 활동으로 예술적인 활동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분과
6. 종교분과 :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분
7. 창작전시분과 : 전시를 통해 예술적인 창작물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분과
8. 체육분과 : 수련과 경기를 통해 생활 체육문화를 보급하는 분과
9. 레저스포츠분과 : 취미 교양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보급하는 분과
10. 학술언론분과 : 참된 지식 탐구와 언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분과

제39조(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행사를 보고, 토의
2. 분과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을 계획

3. 분과장에 대한 탄핵
4. 기타, 각 분과의 고유업무를 수행

제40조(소집)

1. 정기회의 : 정기 분과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 : 임시 분과 회의는 소속 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또는 분과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7절 분과장

제41조(지위)

각 분과의 대표이며, 각 분과의 사업을 주관한다.

제42조(선출방식)

1. 매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이후, 연합회장이 임명하고 대표자 회의에 보고한다.

제43조(권한)

1. 분과회의 소집권
2. 분과예산 승인권
3. 분과의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을 심의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한다.
4. 분과의 동의를 거쳐 분과 내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44조(의무)

1. 분과장은 분과 회의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연합회장의 요구 시 대표자 회의에서 각 분과소속 정동아리의 사업 및 분과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운영위원회에 각 분과 회의의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8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5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장단의 유고 및 궐위 또는 차기 회장단 선거 무산 등으로 연합회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는 체제이다.

제46조(구성)

1. 비대위는 당해 연도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정동아리에 속해있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3.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1. 비대위원장은 연합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비대위는 예산, 결산, 징계, 집행부 임명 및 개편, 회칙 개정 발의 등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행사할 수 있다.
3. 비대위는 차기 회장단이 선출 및 확정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 및 의결 사항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48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해까지로 하며, 차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차기 회장단 임기 개시와 동시에 종료된다.

제9절 특별위원회

제49조(설치)

연합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연합회장이 설치하고 대표자 회의에 보고한다.

제50조(구성)

연합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1조(해체)

목적이 달성되면 대표자 회의에 보고하고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52조(의무)

모든 활동은 대표자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재정)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본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3장 재정

제54조(수입)

1. 본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와 동아리연합회 회비 및 기타 지원금으로 한다.
2. 본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본회의 예산이 된다.
3.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각 동아리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각 사회단체의 기부금은 본회의 예산이 된다.

제55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선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는 4기로 나누되 각 분기별로 예결산을 공개한다.

제56조(예산편성 및 심의)

1.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한다.
2. 동아리에 지급되는 예산은 시행세칙을 두어 별도의 회의를 통해 편성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한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예산의 편성 및 지급에서 제외된다.
4. 분과의 예산은 각 분과 회의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한다.

제57조(예결산 보고)

1. 매 학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단, 결산보고서는 아주대학교 감사위원회 회칙에 의거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된 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58조(예산 집행)

1. 심의된 예산은 분과장과 사무국이 집행한다.
2. 본회의 자체 예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그 인출과 집행은 연합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분과행사의 예산은 분과장이 관리하고 연합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4.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집행한다.

제59조(가예산)

예산의 심의, 의결이 대표자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60조(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자 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61조(지원금 배분)

1. 동아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나 전문성에 관련된 대외활동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지원금은 한 해에 1회, 동아리 등급에 따라 차등 할당되며, 정산은 연 2회, 학기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3. 동아리 내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회에서 확정하여 공지하며, 그에 따라 집행한다.

제62조(이월)

1. 본회의 매 회기 예산의 잉여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2. 각 동아리에 할당된 지원금은 해당 학년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제4장 동아리 등록

제63조(등록 및 승강제)

1. 정동아리 및 준동아리는 매년 재등록을 해야 한다.
2. 신규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서류심사를 거쳐 신규동아리가 된다.
3. 신규동아리는 활동 1년 후 대학문화위원회 활동심사를 거쳐 준동아리가 된다. (단, 활동 성과가 현저히 미비한 경우에는 승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64조(등록 요건)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정동아리, 준동아리 및 신규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회원 수 20명 이상 (본교 학생이어야 하며 3개 단과대학 이상, 특정 학과의 구성이 전체 등록원의 2/3 미만이어야 한다.)
2. 아주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사업이 있어야 한다.
3. 퇴폐적이거나 향락적인 성향의 동아리는 등록할 수 없다.
4. 단순 친목을 위한 동아리나 전문성이 분명하지 않은 동아리는 등록할 수 없다.
5. 전문성이 비슷한 동아리가 등록할 경우, 대학문화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승인한다.
6. 외부단체와 연계되어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운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제65조(재등록 및 신규 등록)

1.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을 원하는 동아리는 매년 학교에서 공지한 등록 시기에 등록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연합회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등록 및 신규 등록에 관한 서류는 학교에서 공지한 양식에 따른다.
3. 재등록 및 신규 등록 여부는 대학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승인한다.

제66조(재등록 및 신규 등록 서류)

1. 재등록/신규 등록 신청서 1부
2. 창립 취지 및 연혁
3. 전년도 활동 보고서 1부
4. 동아리 활동 계획서 1부

제67조(승격)

1. 승격을 원하는 준동아리 및 신규동아리는 매년 학교에서 공지한 등록 시기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연합회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승격심사 서류는 재등록 및 신규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승격 심사를 실시한다.
3. 등록 요건(제63조(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승격될 수 없다.
4.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대학문화위원회에서 승격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한다.
5. 정동아리 및 준동아리로의 승격을 위한 승격심사에는 본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다.
6. 승격 결과는 동아리 등록 종료 후,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에 최초 공지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68조(강등)

1. 기존 등록된 정동아리는 제64조(재등록 및 신규 등록)에서 제출한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문화 서류심사를 받게 된다.
2. 위 심사에서 D등급을 받은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된다.
3. 강등 결과는 동아리 등록 종료 후,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에 최초 공지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4. 공간관리 위원회의 회칙을 위반해 퇴실을 당한 정동아리는 즉시 강등된다.

제69조(동아리 명의 변경)

분과 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한다.

제5장 선거

제70조(선거 시기)

매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에 실시되는 본 선거가 무산되거나 비대위 체제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출마 자격)

회장단 : 회장과 부회장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정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2인 1조로 각 정동아리의 대표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이 출마할 수 있다.

제72조(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없다.

제73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하 선관위라 약칭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합회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
4. 운영위원이 연합회장으로 출마할 시는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5. 선관위는 선거를 지휘, 감독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실시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6. 후보자가 등록된 후 선관위는 탈퇴할 수 없다.
7. 선관위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74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권한)

1.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작성
3. 선거관리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4. 선거에 관련된 제반 홍보물 적법 판정
5. 규정에 벗어난 제반 홍보물에 대한 철거 및 압수
6.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 일정 조정
7. 선거장 질서 유지 및 감독
8. 재선거 여부 결정
9.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 확정
10.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11. 투표장소 및 개표장소 결정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결정

제75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개최)

1.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은 위원장 및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6조(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7조(선거인단)

1. 선거 해당 학기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에 있는 회원 중 각 정동아리 별 10인으로 한다.
3. 선거인 명단 제출 시 선거인단이 10인이 안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4. 동아리들 간 중복 선거 인원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78조(투표 및 당선)

1. 선거 투표는 아주대학교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에 명시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2. 77조 1항의 선거 투표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중선관위 의결 하에 선거 투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투표는 선거인단의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4. 단독 출마 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5. 입후보 조가 2조 이상일 경우,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조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 2개 조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6.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총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하며, 1차 투표 시 1,2위의 표차가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7. 11월 중 선거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해 3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이가 어려울 시 대표자 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8. 투표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후보자를 자동탈락으로 간주하고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9. 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주대학교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9조(등록서류)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선관위 소정 양식)1부
2. 약력 및 입후보 소견서(선관위 소정 양식)1부
3. 재학증명서 각1통
4. 성적증명서 각1통
5. 정동아리 대표자 추천서(재적 동아리의 1/3 이상)
6. 선거규약 이행 및 공정선거 서약서(선관위 소정양식)1부
7. 사진 각 2매

제80조(후보 자격 박탈)

경고 3회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다. (주의 조항은 없는 걸로 한다.)

제81조(경고조항)

1. 상대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에 가해를 가하는 경우
2. 상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유언비어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경우
4. 정책선거가 아니라 상대 후보 진영을 비방, 모략하는 경우
5.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규칙(룰)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사전 선거운동을 전개한 경우
7. 경고 조치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학우들에게 사과 대자보 3장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기로 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사유를 학우들에게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제82조(개표)

투표 및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하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83조(투표함 및 투표용지)

투표함과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검인한 것으로 한다.

제84조(무효표)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관위, 참관인의 검인이 없는 것
3. 기입의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규정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투표용지 안의 상자에 직인이 절반 이상 나와 있거나, 사람 人 (도장)표시가 불분명한 것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제85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당선을 공고하며,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당선 확정 공고를 한다.

제86조(이의신청)

1.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87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동아리방 방문을 기본으로 한다.
2. 동아리방 방문은 후보자 1명에 선거운동본부원 2명으로 제한한다.
3. 선거유세나 정책설명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4. 선거운동기간은 1주일로 한다.

제88조(보궐 선거)

1. 회장단 : 잔여 임기가 12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방학은 제외)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12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에서 그 직을 승계한다.
2. 분과장 : 회장단과 같으며 120일 미만일 경우 연합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임명한다.
3. 11월에 실시하는 본선거가 무산된 경우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탄핵

제89조(회장단 및 집행부 탄핵)

정동아리 대표자 1/4 이상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재적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0조(분과장의 탄핵)

1. 소속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4이상 또는 소속분과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분과 회의에서 논의 후 각 분과 선거인단의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 1항은 제72조에 의해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제7장 징계

제91조(징계사유)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각 동아리의 활동이 매우 부진한 경우
3.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동아리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5.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92조(징계에 해당하는 사항)

1. 주의
    1) 분과회의 1회 불참 (단, 사전에 불참 사유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2) 정기 대표자 회의 또는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1회 지각 (단,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반영된다.)
    3) 지원금에 대한 결산 의무를 이행했으나, 기한에 대해 1회 지각 제출했을 경우 (동아리연합회가 공고한 동아리 활동지원금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고
    1) 주의 상태에 있는 동아리가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주의를 받을 시
    2) 정기 대표자 회의 또는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1회 불참 (단, 사전에 불참 사유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3) 활동이 매우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예산 지원이 행해진 동아리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경우 (단, 해당 학기 중으로 사유서와 예산의 반납이 이루어지면 경고를 해제한다)
    5)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회비를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6) 전체 동아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행한 경우
    7)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동아리방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타 동아리를 비방하는 행위 등)
    8) 지원금에 대한 결산 의무 불이행(해당 학기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서 및 동아리 대표자 통장 사본 제출)

2. 최후경고
    1)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2) 경고상태에 있는 동아리가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을 경우

3. 제명

1) 재등록 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 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2) 경고 4회를 받았거나, 최후경고 상태에 있는 동아리가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3) 동아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3조(징계절차)

1. 주의, 경고 및 최후경고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합회장이 징계내용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2. 제명 : 연합회장 또는 분과 회의에서 발의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연합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94조(징계결과)

1. 징계 사항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경고 상태의 중앙동아리는 추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최후경고 상태의 중앙동아리(정동아리 및 준동아리)는 다음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제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에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한다. (제 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이 취소되고 1주일 이내에 동아리방 및 모든 집기와 지원금을 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자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합회장의 권한으로 강제 집행한다.)

제95조 (징계 유효기간)

1. 주의는 해당 학기 종료 후 다음 1개 학기(방학기간 포함) 동안 유효하다.
2. 경고는 해당 학기 종료 후 다음 1개 학기(방학기간 포함) 동안 유효하다.
3. 최후경고는 해당 학기 종료 후 2개 학기(방학기간 포함) 동안 유효하다.
4. 유효기간 동안 추가 징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고 및 최후경고 상태가 소멸 된다.
5. 제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1년 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단, 당해연도 미등록으로 제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차년도 등록 시 등록할 수 있다.)

제8장 회칙개정

제96조(발의)

1. 운영위원회 및 연합회장이 발의한다.
2. 대표자 회의 및 정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제97조(의결 절차)

회칙개정 발의에 따라 연합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회의 소집 하에 의결한다.

제98조(효력 발생)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99조(효력 상실)

개정회칙 발효 시 이전 회칙은 즉시 효력 정지된다.

제9장 부칙

본 회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하며,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연합회장이 이를 집행하고 대표자 회의에 보고한다.

※ 별첨 ※

사업예산서(예시)

동아리		행사명	
대표자		일시	
연락처		장소	
세부 계획			
(취지, 내용, 대상,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총계		총계	